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48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민홍철・이건태・한정애

이학영 • 손명수 • 문진석

김기표 • 민형배 • 한준호

김병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, 부사관 등의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(헌재 2022. 11. 24. 2020헌마1181).

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

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제6호의 4). 법률 제 호

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실형(벌금형은 제외한다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
  - 다.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·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생 략) 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(2) -----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~ 6의3. (생 략) 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 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지 아니한 사람 가. 실형(벌금형은 제외한다)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 집행이 면제된 날 상 성범죄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.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
고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
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
면제된 날
다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
임처분을 받은 날
7. · 8. (생략) 7. · 8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